

노무비 구분관리 안착하려면 적정공사비 보장해야

기사입력 2012-10-17 14:30:15 |

폰트 + - []

정책연, 원하도급자 업무부담 간소화 방안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노무비 확보가 힘든 금액으로 공사를 따야 하는 현실에서는 원하도급 건설사의 손실과 추가비용 부담만 가중되고 이는 노무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용근로자의 고용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7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올해 초 도입(정부공사 1월, 지자체공사 4월)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완을 주문했다.

기능인력 임금보호를 위한 제도 취지에는 건설업계 역시 공감하지만 노무비를 뺀 나머지 건설공사비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란 지적이다. 수직적 생산구조 아래 발주 단계, 하도급 단계에서 공사비가 연이어 깎이고 실행률이 대가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그 손실이 고스란히 원하도급 건설사의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물량난 아래 인력·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건설사별 저가투찰 경쟁까지 불가피해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대한 업계 반발도 누적되는 상황이란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건설사들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정할 수 있는 원가항목은 통상적으로 이윤, 일반관리비, 노무비다. 이윤, 일반관리비는 상한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공종별 차이가 거의 없는 탓에 대개 노무비가 원가경쟁력의 핵심이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및 삭감 등의 부작용도 컸지만 작업팀별로 수행하는 공사 특성상 작업팀장이 성과급 등을 통해 기능공들을 적절히 제어하고 효율을 높이는 기법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다. 최근처럼 실행원가에 근접하는 공사비로 시공해야 할 상황에서는 관리능력 극대화를 통한 공기단축 등이 절실하지만 이런 여지가 사라졌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특히 재료비, 노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서도 공사금액은 계속 떨어지면서 원하도급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됐고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해 기능공을 뺀 상시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로 인해 가중된 원하도급사의 관리비 등 비용도 전혀 보전되지 않는 건설사의 몫이긴 마찬가지다. 발주자, 원하도급사간의 노무비 지급일정마저 어긋나면 대출로 충당해야 해 관련 이자비용까지 감수해야 한다.

박광배 책임연구원은 "산업 차원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발휘할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잇따르는 주된 이유는 결국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며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의 추가 부담을 줄일 자금조달 지원책과 다단계 임금지급 체계 간소화, 하도급사의 임금관리시스템 접근 허용 등을 포함한 업무부담 경감책이 절실하며 근본 대책은 노무비 외 다른 요소를 포괄한 공사비의 적정성 보장"이라고 지적했다.